



채무자 재기지원의 효과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강영신

국민의 주거 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

금융/정책

채무자 재기지원의 효과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2022. 06



- 저 자 : 강영신 (051-663-8178 / 6094@hf.go.kr)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1. 배경	1
2. 내용	1
II. 국내 채무자 재기지원 사례	2
1. 개요	2
2. 사적채무조정	3
3. 공적채무조정	11
4.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12
5. 성실상환 인센티브	23
6. 재기지원 프로그램	25
III. 정책효과분석 사례	28
1. 개요	28
2. 효과 측정 기법 사례	28
IV. 채무조정·재기지원 관련 선행연구	35
1. 개요	35
2. 선행연구 사례	35
V. 결론	43

요 약

❑ 채무자 재기지원 효과분석 선행연구의 필요성

-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추세이나 채무자 재기지원에 대한 효과분석은 미비한 상황
-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 국내 사례와 관련 선행연구, 더불어 정책 효과분석 기법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하여 추후 채무자 재기지원제도 효과분석 연구의 초석을 마련

❑ 채무자 재기지원제도 사례

- 채무자 재기지원제도 사례는 구제 주체별로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법원,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으로 구분
- 그 외 채권·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일시적 채무조정, 성실상환 인센티브 및 재기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음

❑ 정책효과분석

- 정책효과란 정책 시행 전 계획한 목표 달성 여부, 성취 정도, 결과의 적절 수준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중요도-성취도분석, 조건부가치 평가법, 비용편익 분석, 산업연관분석 등이 있음

❑ 채무조정 관련 선행연구 정리를 통한 시사점

-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이 있으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소극적 채무조정 대신 구상권 회수 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는 적극적 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조정 이용자의 특성(연령·가족구성원 등 사회학적 요소, 채무액·기간 등 상환 정보, 상환여력,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채무 감면율 및 분할 상환 기간 산출
- 채무 감면율 산출 시에는 재정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채무조정 이용자의 실효 방지를 위하여 신용 상담 기능 강화 등 재기지원 방안 다양화 및 활성화

I. 서론

1.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상환유예 등의 채무자 재기지원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추세이나 채무자 재기지원에 대한 효과분석은 미비한 상황
- 국내 채무자 재기지원제도는 각 주체별, 채권·채무자 특성별로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이 다른 편
-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 국내 사례와 관련 선행연구, 더불어 정책 효과분석 기법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하여 추후 채무자 재기지원제도 효과분석 연구의 초석을 마련

2. 내용

-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국내에서 시행 중인 채무자 재기지원제도 사례에 대한 정리와 정책 효과분석이나 채무조정제도와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의 정리임
- 채무자 재기지원제도 사례는 구제 주체별로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법원,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으로 구분하고, 그 외 채권·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일시적 채무조정, 성실상환 인센티브 및 재기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 정책 효과분석 선행연구는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이론적 방법에 대한 정리와 기존 연구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살펴봄
- 채무조정제도 관련 선행연구는 기존 채무자 재기지원 사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①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② 채무조정제도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 그리고 ③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한 연구를 정리

II. 국내 채무자 재기지원 사례

1. 개요

- 채무자 재기지원은 채무조정(채무자 구제제도) 및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의미로 과다채무로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채무조정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조정, 원금 일부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제도는 과다채무자에게 경제적 활동의 유인을 제공하여 거시 경제의 생산력 감소를 방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범죄·자살 행위 같은 사회불안 요소를 감소시키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이 가능
 - 금융회사의 측면에서도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환의지가 있는 연체채무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시행
 - 하지만 채무조정이나 파산을 너무 쉽게 허용할 경우 채무자의 제도 오남용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해쳐져 계약 이행 존중이라는 법적·사회적 제도를 흔들 수 있음
- 채무조정은 구제 주체에 따라 공적·사적 채무조정으로 구분
 -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금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등이 해당하며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은 신복위와 금융회사 간 협약에 의해 효력이 있는 반면 공적채무조정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력이 발생
- 재기지원 프로그램은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표 1> 채무조정제도

	사적채무조정				공적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법원	
시행시기	2019.9	2009.4	2002.10	2013.3	2004.9	2002.1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보유채권			국민행복기금 인수채권	제한없음 (새금, 건보료, 사채 포함)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채무범위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인수채권 1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제한없음
대상	연체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 단기연체자	연체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연체 6개월 초과	상환 불능상태이나 고정소득이 있는 채무자	소득·재산이 없는 상환불가자
보증인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 내용	- 연체이자 감면 - 약정이자율 적용 - 분할 상환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인하 - 분할 상환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일부 감면 - 분할 상환	- 연체·약정 이자 감면 - 원금 일부 감면 - 분할 상환	보유재산 이상 변제 (원금감면 평균 70%)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 면책 (원금감면 100%)
법적효력	합의효력, 변제완료 시 면책				판결효력, 변제 완료시 면책	판결효력, 청산후 면책
연체정보	미등록		지원확정시 연체 정보 해제		변제계획 인가 시 연체정보 해제	면책 결정시 연체정보 해제

※ 자료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2. 사적채무조정

- 사적채무조정을 운영 주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그 외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채권·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일시적 채무조정, 성실상환 인센티브로 나누어 기술

1)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2002년 10월 신용회복지원위원회로 시작되었으며 2016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재출범
- 신복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으로 구분하여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으로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정상이행중인 채무자더라도 연체가 예상될 경우 신청 가능

- 채무범위: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 연체 기간: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
- 신규채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채무자조건: 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무급휴직·폐업자, ②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받은 경우(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③ 최근 신용이 악화된 경우(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연체 기간 1~30일, 최근 6개월 동안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

● (지원내용)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 상환, 상환 유예를 지원

-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조정: 약정이자율(최고 연 15%, 신용카드 10%)
- 분할 상환: 최장 10년(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상환유예: 6개월(최장 3년까지 연장가능)

■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1~89일인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자율 조정이 특징

- 채무범위: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 연체 기간: 연체 기간 31~89일(현재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더라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신규채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지원내용) 연체이자 감면, 분할 상환, 이자율 인하를 지원

- 연체이자 감면

- 분할 상환: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이자율 인하: 약정 이자율의 30~70% 인하(이자율 3.25%~8%)

■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채무 조정으로 원금감면이 특징
 - 채무범위: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 연체 기간: 연체 기간 90일 이상
 - 신규채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지원내용) 이자 전액 감면, 분할 상환, 채무감면을 지원
 - 이자 전액 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분할 상환: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채무감면: 미상각채권 0~30%, 상각채권 20~70% 감면

2) 국민행복기금

-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출범하였으며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여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등을 지원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 채권의 채무자
 - 금융회사에서 일괄 인수한 채권 중 채무조정 미신청 채권이 대상이며 개별 매입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됨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 채무 중 20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관리중인 채무자

● **(지원내용) 채무자의 연령,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채무 일부감면, 분할 상환, 상환유예 등을 지원**

- 채무감면: 일반적으로는 20~70% 내외에서 감면
 - 특수채무관계자*는 70, 80, 90%의 감면을 적용
 -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1~3급),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 20, 30% 추가 감면
- 분할 상환: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 상환유예: 약정금액 상환 중 지속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또는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상환유예 가능
 - 실직·폐업, 질병, 특별재난,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승인: 최장 2년
 - 대학생, 미취업 청년: 대학 졸업 시까지 유예되며, 미취업의 경우 최장 3년
 - 미성년자, 군 복무자, 구속수감자, 직업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사유 해소 시까지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하여 관리 중인 학자금대출 채무를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

- 대상: '13.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9월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하여 관리중인 채무
- 지원내용: 원금감면, 분할 상환, 상환유예를 지원
 - 원금감면: 채무자 연령,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70%까지 채무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등은 60~90% 감면)
 - 분할 상환: 최장 10년까지 제공
 - 상환유예: 실직, 질병, 사고 등의 사유(6개월 단위로 최장 2년)나 대학생, 미취업청년, 미성년자의 경우 상환을 유예

3)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에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 중

■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

- 보금자리론과 주택보증(전세자금, 중도금)에 대하여 자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
- (보금자리론) 경매를 통하여 보금자리론을 상환했음에도 채무가 남은 채무자가 주요 대상이며 채무 감면과 분할 상환을 지원
 - 지원 대상: 채무감면 신청 시 재산 및 소득 상태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채무 감면, 분할 상환
 - 채무감면: 미수이자, 지연배상금(대출 원금 및 법적 절차 비용 등은 제외)
 - 분할 상환: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보증) HF 보증으로 받은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채무자가 미상환 시 HF에서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채무자는 은행이 아닌 HF에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조정을 지원
 - 지원 대상: 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중도금 등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채무감면 신청 시 재산, 소득 상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지원내용: 채무감면, 분할 상환
 - 채무감면: 손해금 및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원금 및 법적절차비용 등은 제외)
 - 분할 상환: 약정금액의 5% 수준인 분할 상환 초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최장 10년
- (학자금) HF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채무의 90%를 변제하고 HF는 보증 부분(10%)에 대한 채무조정을 시행
 - 지원 대상: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공사의 보증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채무감면 신청 시 재산, 소득 상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지원내용: 채무감면, 분할 상환
 - 채무감면: 미수이자, 지연배상금(대출 원금 및 법적 절차 비용 등은 제외)

■ 주택도시보증공사 '살림살림제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자금보증 등의 개인보증과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의 기업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보증종류별 맞춤형 채무자 재기지원제도인 '살림살림제도'를 운영
 - HUG에서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와 법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외에 살림살림제도를 추가로 직접 운영
- 개인보증 채무자 살림살림 제도의 지원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① 채권 행사 유예, ② 분할 상환, ③ 채무감면
 - 채권행사 유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무상황에 있어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이나 소 제기 등의 채권행사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
 - 유예기간: 대위변제 다음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유예 가능
 - 중도 상환의무: 해당 전세목적물을 매도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입주할 경우 유예승인 효력이 사라지며 위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함
 - 지연이자: 유예기간동안 채무원금에 대해 법정이율(연5%)의 지연배상금 발생
 - 분할 상환: 채무액을 월별, 분기별로 나눠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
 - 최대 3년 동안 균등 또는 비균등 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0.5%p 추가 감면
 - 균등 분할 상환: 회차별(매월, 매분기)로 채무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
 - 비균등 분할 상환: 채무원금의 0.4%이상을 회차별 상환액으로 나누어 상환
 - 채무감면: 채무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이자나 지연배상금을 감면
- 기업보증의 경우 분할 상환과 채무감면을 지원하며, 분할 상환의 경우 개인보증과 달리 최대 5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예금보험공사 채무조정

●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예금보호대상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의 연체 대출금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

*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 채무자의 재산, 직업, 연령, 연체 기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채무조정을 통한 최소 상환금액은 회수가능액(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의 재산)보다 커야 함
- 지원 대상: 파산된 금융회사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 면책불가사유: 채무액보다 회수가능액이 큰 경우,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부실책임자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 채무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능
- 지원내용: 연체금액 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며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 적용
 - 연체금액 감면: 원금은 최대 70%, 이자는 전액 감면 가능(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소외계층은 원금의 80~90%, 이자 전액 감면 가능)
 - 이자율 조정: 고금리대출의 경우 이자율 조정
 - 분할 상환: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가능(사회소외계층은 분할 상환 이자 면제)
 - 상환유예: 채무조정으로 분할 상환 약정 후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장 3년간 상환 유예 가능
 - 신속채무조정: 원금 1,000만 원 미만, 사회소외계층 채무자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제공
- 케이알앤씨는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09년 출범된 예보의 자회사로 인수한 대출채권 채무자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예보의 채무조정과 비슷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관리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시행하여 경제적 회생을 지원

-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분할 상환제도,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 상환약정제도,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정상화(기한이익회복)제도 등이 있음**
 - **분할 상환:** 대위변제나 기한이익상실로 학자금대출 채무액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납부를 지원
 - 지원내용: 최장 10년까지(2,000만 원 미만은 20년까지) 분할 상환을 허용하며 신용도 판단정도 해제
 - 분할 상환 조건변경: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부 조건(약정 미납액여부, 조건변경 잔여회수)을 충족할 시 변경가능
 - **손해금 감면:**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춰줌
 - 대상: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채무상환이 낮은 채무자가 소유한 대위변제 후 발생 손해금(구상채권) 또는 지연배상금(기한이익상실채권)
 - 지원내용: 대출실행연도, 학자금 특성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되며 분할 상환 시 초입금을 약정금액의 10% 이상 납부하거나 일시에 원금 전액 상환할 경우 손해금(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분할 상환약정 상환유예를 지원
 - 대상: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 자녀부양
 - 지원내용: 기존 분할 상환 스케줄을 최장 6개월까지 유예 가능, 이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 상환약정:** 중소기업 재직자가 분할 상환약정 체결 후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 일부를 감면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 지원내용: 대출실행연도, 학자금 특성 등에 따라 감면율 차등적용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일부 계층의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및 재등록 유예를 통해 금융거래 및 취업 지원
 - 대상: 대학생(휴학 및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대학원 입학 2년 이내, 중소기업 재직자
 - **기한이익회복:**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할 경우 당초 대출조건을 회복

3. 공적채무조정

- 공적채무조정은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사적 채무조정과 달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 면책하는 제도
- 개인파산은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변제 의무를 면책한다는 점에서 채무 조정의 범위를 벗어남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재정적 문제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과다채무자 중 일정 수입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
- 대상: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중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예정)인 개인 채무자
- 채무범위: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 지원 내용: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 분할 변제 후 남은 채무는 면책

▣ 개인파산

- 개인파산은 채무조정의 범주를 벗어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 대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채무자
- 지원내용: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 면책불허가: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도박 채무, 채무 허위 증가 등의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해이 방지
-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공·사법상의 제한을 받고 신원조회대상이 됨
 - 공·사법상의 제한: ①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불가능, ②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불가능, ③ 상법상 합명 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

4.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1)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 보증부 대출, 주택담보대출, 장기소액연체자 등 채권·채무자의 특수성으로 채무조정이 쉽지 않은 경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

■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¹⁾

- 장기소액연체자란 원금 1,000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로 약 159만 명인 것으로 추산(국민행복기금 내 83만 명('17.9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외 약 76만 명('16년 말 기준))
 - 장기소액연체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이거나 저신용·저소득층에 해당하여 상환 능력이 없어 재기지원 방안 마련 필요
-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
 - 지원 대상: 본인신청, 상환능력 심사(회수 가능한 재산(압류금지재산, 10년 이상 장애인 자동차,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제외)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
 -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는 상환의지 여부(약정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채무를 감면하였으며,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는 본인신청 시 채권매입,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속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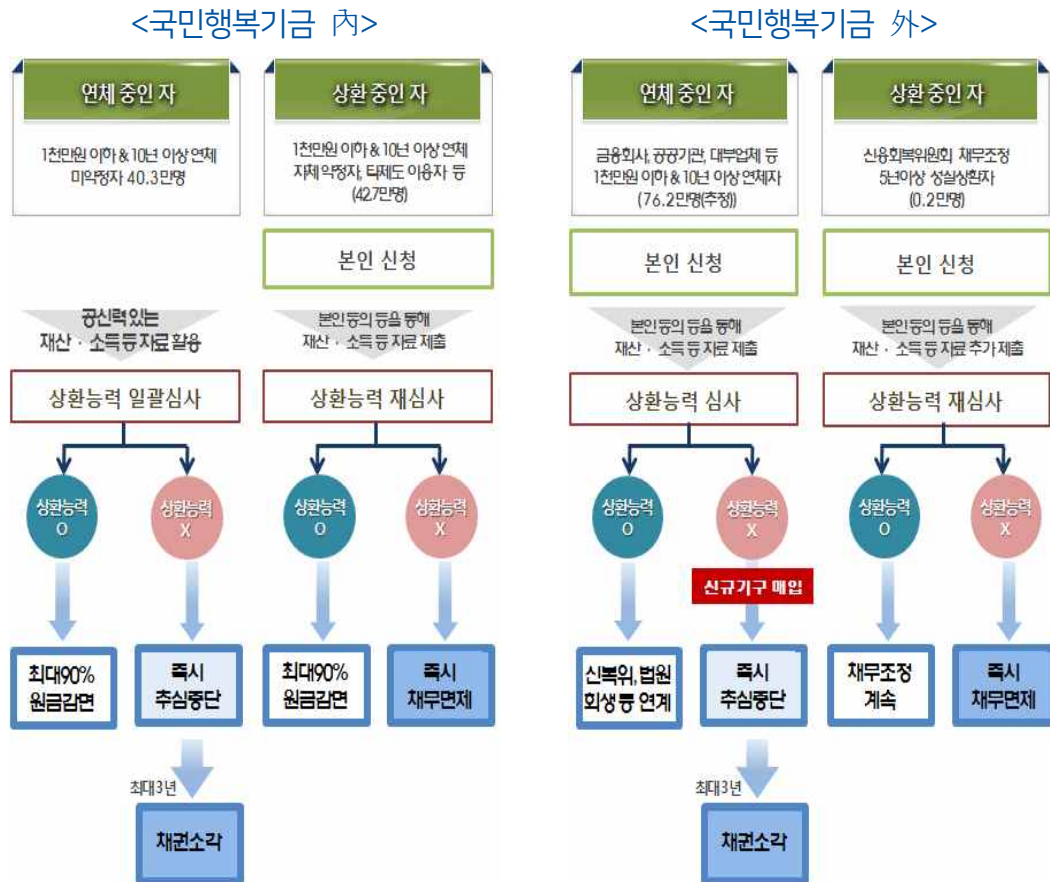
<표 2>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 채무조정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민 행복 기금 내	연체중 (미약정)	• 상환능력 일괄 심사 후, 상환능력 없는 자에 대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 채권 소각
	상환중 (약정)	•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는 경우 즉시 채무 면제 등 채무조정 지원(既 완료)
국민 행복 기금 외	연체중 (미약정)	•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는 경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채권 매입('18.2월~'19.2월)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3년 후 채권 소각
	신복위 채무조정 상환중	•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 심사 후 상환능력 없으면 즉시 채무 면제(既 완료)

※ 자료 :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2017.11.29.)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1)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2017.11.29.)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그림 1>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 채무조정 구조



※ 자료 :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2017.11.29.)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 채무조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고용부, 중기부, 지자체 등과 연계한 재기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표 3>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교육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 프로그램
• 행복잡이(구직등록→취업상담→알선) • 취업성공패키지(상담·검사→직업훈련→알선)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 드림셋 사업(일자리+자산형성+신용회복 연계)	• 창업교육 프로그램(창업교육, 코칭 및 멘토링, 자금지원 등) • 창업 정책자금 지원(시설·운전자금, 예비창업자 보증 등)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11.29.)

- (실적) '17.11월 방안발표 후 '21.5월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장기소액연체자 중 미약정 채무자 40.3만 명 중 상환능력이 없는 33.5만 명의 추심을 중단했다는 실적 발표

<표 4>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채무조정) 주요 실적

구분		지원내용
국민 행복 기금 내	연체중 (미약정)	17.3만 명(0.9조원) 既 소각 11.8만 명(0.6조원) 금번 소각 4.4만 명(0.1조원) 최종 상환능력 심사 후 '21.下 소각여부 결정
	상환중 (약정)	4.3만 명(0.6조원) 채무면제, 채무조정 등 既완료
국민 행복 기금 외	연체중 (미약정)	0.9만 명(350억 원) 21.下부터 심사, 소각 예정
	신복위 채무조정 상환중	222명(1.4억 원) 채무면제 既완료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5.18.)

▣ 보증부 대출 신용회복 지원²⁾

- (추진 배경) 보증부 대출의 경우 일반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간 부실채권 처리과정의 차이로 실효적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채무자가 완제하지 못하고 다시 연체상황에 놓이는 등 채무자 재기지원의 실패 가능성이 높음

<표 5> 일반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간 부실채권 처리과정 차이점

	일반 금융회사	보증기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가능시점	연체 발생시점부터 신청가능 (연체 전이라도 연체우려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연체 후 대위변제가 이뤄져야 신청가능
상각기준	일반적으로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처리	재정안정성 및 구상채권 회수 등을 위해 상각요건 제한적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2.29.)

- 코로나19 이후 보증부 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 연체로 인한 대위변제도 늘어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
- 보증부 대출의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2021년 12월 신용회복위원회와 5개 보증기관(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이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
- 보증부 대출 신용회복지원 방안은 크게 ①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을 개선과 ② 원금 감면기준 개선으로 구분됨
 - 미상각채권 감면율: 보증기관은 상각유인이 낮아 채권 상각 사례가 적은 편으로 그로인해 일반 금융회사 대출과 비교하여 감면율이 약 50% 수준으로 낮은 편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2.29.)

- 개선 전: 상각채권 20~70%, 미상각채권 0~30%
- 개선 후: 상각채권 20~70%, 미상각채권 0~70%(대위변제 1년 이상 경과시)
- 원금 감면기준 개선: 연체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이 가능한 일반 금융회사 대출과 달리 보증부 대출은 연체 후 약 1년 3개월(대위변제 3개월 포함)이 경과 하여야 원금감면이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채무부담을 안게 됨
- 개선 전: 연체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대위변제,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감면(0~30%)
- 개선 후: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시 원금감면 허용
- **보증기관의 회수율 저해, 도덕적 해이 유발 방지를 위해 보증부대출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2023년까지 시범적·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이후 상시제도화를 재검토하며, 3단계의 엄격한 심사로 도덕적 해이 검증**
- 도덕적 해이 검증 절차는 신복위 심사, 신의위 심의, 채권금융기관 동의로 구성 되어 있으며 허위 재산신고 등이 걸릴 경우 기존 채무조정 효력 상실 조치 검토
- 신복위 심사: 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재산, 부양가족 정보, 채권금융기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채무조정 적정성 여부 심사
- 심의위 심의: 개인채무조정안 적정성 심의·의결
- 채권금융기관 동의: 심의위 의결 사항을 통지받아 10일 이내에 동의여부 결정

■ H.F 재기지원 패키지(채무조정 프로그램)³⁾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신복위는 주택금융 취약 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해 HF(Happy+Finance) 재기지원 패키지*를 출시**
- * HF 재기지원 패키지는 HF의 채무조정패키지와 서금원의 행복도약 패키지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서금원 행복도약 패키지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에 서술
- **HF 채무조정 패키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적격 대출)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상환유예, 지연배상금 감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담보권 실행유예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3)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21.9.9.) 주택금융 취약차주 돌봄에 공공기관이 나선다

<표 6> HF 채무조정 패기지

	주요내용	비고
원금상환유예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1년간 원금납부 유예	추가 2회까지 연장 허용
지연배상금 감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하여 대출거래의 정상화 지원	동일연도 중 채무자별 1회, 총 대출기간 중 2회 가능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유지 중인 정책모기지를 캠프의 장기 대출로 전환하고 공사는 지연배상금 감면	최장 33년
담보권 실행 유예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주주택 경매신청을 유예	3개월 + α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21.9.9.) 주택금융 취약차주 돌봄에 공공기관이 나선다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각지원)

- 신복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 유예와 담보주택 매매지원을 시행
- (담보권 실행유예) 법원 경매 등 불리한 조건의 담보주택 매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담보권 실행유예 뿐만 아니라 채무감면, 담보주택 매각지원, 분할 상환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주택담보대출 연체 기간 30일 초과, 담보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공유지분 소유시 지원 불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개인채무자
 - 담보권 실행유예: 최초 6개월간 실행이 유예되며 6개월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연장 가능하나 연장할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해야함
 -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는 상환유예되나 유예기간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입하여야 함(약정이자율이 더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 적용)
 - 채무감면: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 전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감면
 - 분할 상환: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채무자가 상환능력을 회복할 경우 주담대 장기분할 상환 채무조정을 지원
- (담보주택 매매지원) 담보주택이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을 지원

- 지원 대상: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되거나 장기분할 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지원가능하며 그 외 위원회가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지원가능
- 지원내용: 매각 지원, 매각 후 사후처리, 잔여채무 채무조정 순으로 이뤄짐
 - 매각지원: 캠코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매각 추진
 - 매각 후 사후처리: 캠코는 매매대금을 신복위로 송금, 신복위는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
 - 잔여채무 채무조정: 매매대금으로 상환 후 남은 잔존채무는 개인워크아웃 지원요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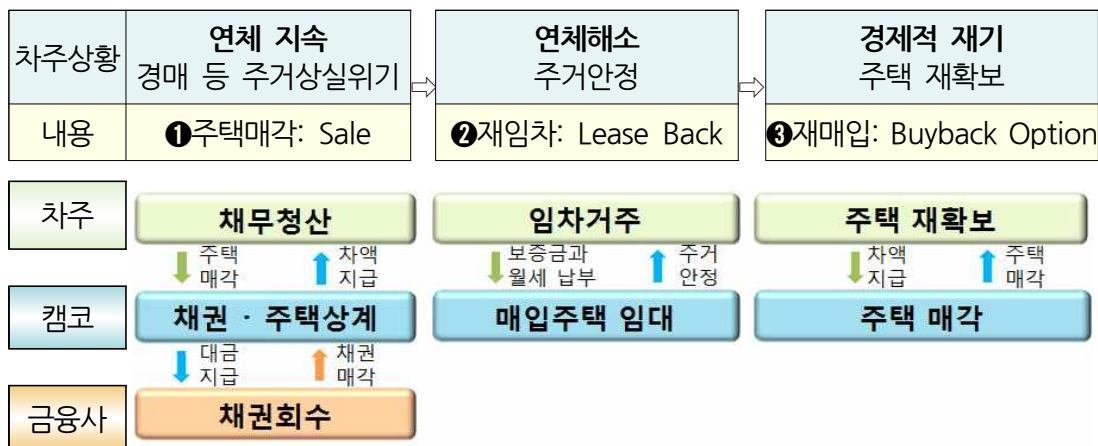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⁴⁾

- (배경)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경매 등)로 채권회수가 가능하기에 상대적으로 채무조정 협의가 어려움
- 신용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이 저조하였으며 위의 사유로 주담대 채무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음
- 2019년 1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
 - 신복위 채무조정 주담대 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시점을 성실상환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일률적인 조정조건 적용 대신 채무자 재기지원 및 채권자 회수가치 제고 고려를 위한 다양한 주담대 채무조정 방식 도입
- 2020년 1월 추가로 시행된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① 신복위 거절차주에 대한 추가적 조정기회 부여, ② 캠코 채무조정을 채권자 중심에서 차주 신청 중심으로 전환, ③ 연체 서민차주에 특화된 Sale & Lease Back 프로그램 도입
 - 신복위 거절차주: 신복위 제도는 채권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가능하므로 채권자 부동의로 거절된 차주에게 캠코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 제공

4)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2019.01)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금융위원회(2020.01)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 캠프 채무조정: 채권자(금융회사)의 채권 매각 의사에 따라 채무조정 기회가 결정되던 기존 방식에서 신복위 거절차주(1주택 서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캠프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차주 신청 중심 제도로 전환
 - 대상: 연체가 3개월 이상인 6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해당주택 실거주)로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채무자 중 신복위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채무자
- Sale & Lease Back: 신복위·캠프 채무조정으로도 일정수준 상환능력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중심으로 캠프에 주택을 매각하고 해당주택을 재임차하여 장기 임차거주하는 프로그램 운영
 - 임대보증금: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 임대조건: 주변 시세수준의 월 임대료, 최장 11년(최초 5년, 2년씩 최대 3회 연장) 임차거주 가능
 - 임차종료: 임차종료시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관리수수료(관리비 원가, 재매입권 운용 리스크 등)를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를 할인하여 매입할 수 있으며, 하락했을 경우에는 기회비용(이사비, 복비 등)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가능

<그림 2> 연체차주 특화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지원 프로그램(SLB) 개요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01)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 신복위 채무자 특성별 특별지원 채무조정

- 신복위에서는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해외동포, 취약계층 등을 위한 특별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 (대학생·미취업청년 지원) 취업 전 채무 연체가 발생한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사회 편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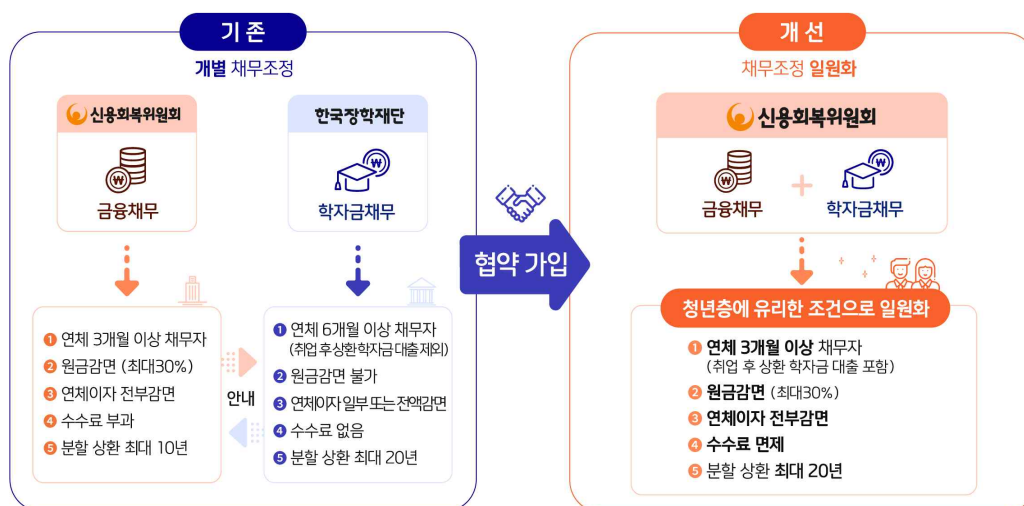
- 지원 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만 34세 미취업청년
-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상환유예, 신청비용(5만 원) 면제
 - 대학생 상환유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도 취업할 때까지 최장 4년까지 추가 상환유예 가능
 - 미취업청년 상환유예: 최장 5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장 2년간 추가 상환유예가 가능함
- (군복무자) 군복무자 또는 입대 예정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전역 이후 취업에 문제가 없도록 채무조정을 지원
 - 지원 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군복무자, 6개월 내 입대예정자
 -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전역일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전역 후 취업할 때까지 최장 2년까지 추가유예 가능,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지원, 신청비용 면제(5만 원)
- (해외동포) 과거 국내에서 연체된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
 - 지원 대상: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불량자, 연체 90일 이상)인 해외동포
 - 지원내용: 채무내역확인, 신용등급 확인, 채무감면,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
 -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을 감면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30~70%를 감면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자 등의 소액채무 상환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
 - 지원 대상: 채무원금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며 보유 재산조건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채무자를 지원하며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10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보유재산 조건과 저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 보유재산 조건: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금액 범위 이내
 - 저소득 조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지원내용: 채무감면, 이행 후 면책을 지원
 -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며 원금은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상각 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
 -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은 90%, 고령자는 80%, 장기연체자는 70%를 감면(상각채권)
 - 이행 후 면책: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상 상환하였으며, 조정 후 채무의 1/2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면책

▣ 학자금 대출 통합 채무조정⁵⁾

- '20.11월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복위는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모두 이용 중인 청년 다중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합 채무조정을 시행
- 한국장학재단은 신복위 협약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금융채무는 신복위에, 학자금 채무는 한국장학재단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학자금채무 한번에 채무조정이 가능한 통합 채무조정으로 개선

<그림 3> 통합 채무조정 개선안



※ 자료 : 교육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1.22.) 부처·기관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 교육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1.22.) 부처·기관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 일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나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에 일시적으로 운영 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국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취약채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코로나19 포함)⁶⁾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가계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연체(우려)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마련
- 재기지원 방안은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단일채무자(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단일·다중채무자(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장기연체자(캠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로 나뉘게 됨
 -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으나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운영
-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발생·지속 방지
 - 채무범위: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담보대출, 보증대출 제외), 보증부 정책서민 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 *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15, 햇살론 유스, 바뀌드림론, 안전망 대출 I II
 - 대상: 연체 발생 직전~단기연체(3개월 미만) 중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소득이 월 채무 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
 - 지원내용: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 지원
- 신복위 채무조정은 단일·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복위와 금융기관의 협약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음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6.11.)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2021.12.8.)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

- 채무범위: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 대상: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연체(우려) 개인채무자(연체직전~3개월 이상 장기연체)
- 지원내용: 연체 기간에 따라 상환유예, 원금감면을 지원
 - 연체우려,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이자 전액면제, 원금감면율 10%p 추가적용(최대 70%),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캠코 자체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
- 채무범위: '20.2월~'22.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 중 신청한 채권
- 대상: 대상채권 관련 금융회사와 채무자
 - 금융회사: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해야할 경우 캠코에 우선적으로 매각
 - 개인채무자: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무자가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할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유보와 채무조정을 지원
 - 추심유보: 매입 후 일정기간동안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해주며 상환요구 등의 추심을 유보
 - 채무조정: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간 상환을 유예해주며, 채무감면, 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 **신복위 특별상환유예(코로나19 피해자), 재난상환유예**

- **(특별상환유예)** 2020년 4월 29일 이전 프리워크아웃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한 코로나19 피해자가 지원 대상으로 '20.3월부터 '22.2월까지 시행
- 지원내용: 6개월 상환유예, 유예이자·신청비용 면제
- **(재난상환유예)**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피해자를 위한 상환유예제도로 신용회복지원 협약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2022년 2월부터 시행

- 지원내용: 최장 1년 상환유예, 유예이자 납입, 신청비용 면제

▣ 예보 코로나19 피해자 무이자 상환유예, 가지급금 추가 감면

- 예보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채무자들을 위해 무이자 상환유예 및 가지급금* 추가 감면율을 적용

* 채권자가 채권 회수 과정에서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지급한 비용

- 상환유예: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 상환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가 대상이며 최대 12개월간 무이자 상환유예 지원, 20.3월 처음 실시하였으며 21.3월과 22.3월 각각 최대 12개월씩 추가적으로 연장
- 가지급금 추가 감면: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하여 최대 70% 감면율을 적용하나 코로나19 피해자,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은 최대 90%까지 감면

5. 성실상환 인센티브

- 채무조정 신청 후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환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신용정보 조기삭제, 소액 대출, 전세자금 보증, 일시완제 시 추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신용정보 조기삭제

- 신용정보조회표상 신용회복지원정보를 조기 삭제함으로써 개인신용평가 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 영향 제공
- 대상: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 이후 24개월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나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채무자

▣ 소액신용대출

- 변제 계획 성실 이행자를 위해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지원
- 지원 대상: 신복위 채무조정 이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자

-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용도로 최장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 가능하며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 용도 및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을 지원

- 소액신용카드: 최소한도 50만 원 이내로,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됨
 - 지원 대상: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이상 상환 및 미납이 없는 채무자
 - 지원내용: 신청인의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 카드회사에서 이 정보를 심사하여 활용하여 적격자에게 카드 발급
- 소액체크카드: 한도 30만 원 이내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기부금으로 운영
 - 지원 대상: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상환 및 미납이 없는 채무자(후불교통체크카드-6개월 이상, 소액신용체크카드-12개월 이상)
 - 지원내용: 신청인의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 카드회사에서 이 정보를 심사하여 활용하여 적격자에게 카드 발급

■ 전세자금 특례보증(HF)

●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

- 임차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가 없어야함
- 대상: ① 신복위의 채무조정 이후 변제금을 24회 이상(프리워크아웃은 12회) 납입, ②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신복위의 채무조정 완료 3년 이내, ③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
- 지원내용: 최대 3,000만 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 원)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연 보증료는 0.05%~0.15%

■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 모두 1년 이상 성실납부자가 일시 완제를 할 경우 잔여채무를 추가 감면

- (신복위) 채무조정 이후 12개월 이상 납부한 성실납부자가 잔여채무를 일시 완제할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잔존채무액의 10~15%를 추가 감면
 - 제외 채무: 원리금분할 상환 채무, 담보채무, 수정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 채무, 잔여상환기간 6회 미만 채무는 제외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 1년이 경과하고 분할 상환금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자나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완료한 채무관계자 및 가구원이 조기상환을 신청할 경우 추가 감면 가능
 - 지원내용: 상환 회차에 따라 추가 감면율을 10~15%로 적용하며,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참여 완료자는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자금

- 신복위 채무조정 중 남은 잔액을 서금원 무이자 대출(신용카드 사회공헌 재단 기부금 재원)을 통하여 상환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 지원 대상: 채무조정액을 75% 이상 상환, 잔여채무자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신용카드 채무 보유, 신복위로부터 추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잔여 채무금액에 대해 무이자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출(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5년)

6. 재기지원 프로그램

- 연체된 채무로 인한 저신용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층 등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취업촉진, 신용상승 등을 지원하며, 신용상담·교육, 취업 관련 교육도 제공

1) 신복위 프로그램

■ 신용복지컨설팅, 신용도우미

- (신용복지컨설팅)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신용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서민금융 및 복지서비스 등 신용상승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화·앱 상담 서비스

- '20년 하반기 이용자 중 57%의 신용점수가 평균 48점 상승, 21.5월 기준 18,000여명이 이용 중
- (신용도우미)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를 대상으로 1년간 신용점수 관리·상승 서비스와 관련 연계서비스 등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컨설팅
- '21년 4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21.4월 한달 간 정책서민금융·복지제도 연계 안내 2,615건, '21.5월 기준 신용도우미·신용비타민을 17,000여명 이용 중

▣ 채무조정 미취업 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

- 신복위, 서금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용회복지원 중인 미취업 청년들의 신용상태 개선과 취업 지원이 목적
- 신용복지컨설팅,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지원금 지급(신용도 상승 시 50만 원,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수료 시 30만 원, 적금 납입 시 자산형성금 최대 50만 원)

▣ 지방법원 연계 개인회생 파산자 신용교육

- 신복위는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부산, 의정부, 수원 등의 전국 9개 법원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파산자 신용교육을 시행
- 개인회생·파산 이후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역량 강화가 주요 목적으로 '21년 8월 말 기준 5.4만 명이 교육 이수

2) 금융기관 자체 프로그램

▣ 예보 취업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 예보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연체채무자의 취업을 지원하며, 정책자금이나 복지 등의 서비스를 연결
- 취업지원: 채무조정 약정 시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 등에서 취업설명회 참가신청을 할 경우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설명회나 취업성공패기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구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정책자금: 채무조정 약정 시 자금지원 등에 대한 상담신청을 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결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을 지원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 HF 재기지원 패키지(재기지원 프로그램)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신복위는 주택금융 취약차주의 재기지원을 위해 HF(Happy+Finance) 재기지원 패키지*를 출시

* HF 재기지원 패키지는 HF의 채무조정패키지와 서금원의 행복도약 패키지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HF 채무조정패키지는 금융기관 개별 채무조정에 서술

- 서금원 행복도약 패키지는 실직·폐업, 소득감소, 신용위기 등으로 HF 채무조정 패키지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위해 취업지원, 자영업컨설팅,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금융교육을 제공

<표 7> 서금원 행복도약 패키지

	주요내용	비고
취업지원	실직·폐업자 등에 1:1 맞춤형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으로 조기취업을 지원	전국 9개 통합지원센터 대면 및 유선 상담 가능
자영업 컨설팅	자영업자에게 경영진단 및 맞춤형 사업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업환경 개선	사업품목조정, 마케팅 노하우 등 (컨설턴트 150여명)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신용·부채 관리 및 개선방안 컨설팅 제공	유선 또는 채팅상담 앱(App) 신청·조회 가능
금융교육	차주의 금융이해력을 높여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2021.9.9.) 주택금융 취약차주 돌봄에 공공기관이 나선다

III. 정책효과분석 사례

1. 개요

- 이번 장의 주요 내용은 정책효과분석 기법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과 해당 방법론을 활용하여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구성
- 정책효과에 대해 많은 학자는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책 시행 전 계획한 목표 달성 여부, 성취 정도, 결과의 적절 수준 등을 효과로 정의(윤수재, 2019)
- 효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① 특정 프로그램(제도)의 참가자가 비참가자 대비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측정하거나, ② 제도 시행 전 설정 목표 달성 여부, ③ 제도 시행 후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 국민 행동의 변화 등을 측정하여 산출
 - 공공사업, 정책은 사업주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과 공공의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산출되지 않는 편익도 고려하여야 함
- 정책효과 및 영향을 측정·평가하는 기법으로는 중요도-성취도 분석, 조건부가치 평가법, 비용편익분석, 회귀분석, 산업연관분석, 논리모형, 시나리오 기법, 델파이 기법 등이 있음

2. 효과 측정 기법 사례

- 정책효과·영향 측정 기법 중 조건부가치 평가법, 중요도-성취도 분석, 비용 편익분석, 산업연관분석, 거시계량모형, PSM·DID의 사례를 정리

1) 조건부가치 평가법

■ 개요

- 조건부가치 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이란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려는 방법 중 하나로 가상의 조건을

설정하여 해당 사업 대상자들에게 이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

- **지불의사 및 지불의사금액 도출을 위한 CVM의 설문방법은 직접 질문 방법, 직접 지불의사 방법, 경매법, 지불카드법, 양분선택법이 있음**
 - 직접 질문 방법: 정책, 재화에 대하여 직접 지불의사를 질문
 - 직접 지불의사 방법: 가격에 대해 직접 질문
 - 경매법: 임의의 지불의사금액에 대해 지불의사를 반복적으로 질문
 - 지불카드법: 타 항목의 가구당 평균 지출 목록을 함께 제시하며 해당 질문에 대한 지출액을 질문
 - 양분선택방법: 일정금액 지불에 대한 의사 여부를 질문

■ 분석사례

- **문광민(2021)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공여국 차원의 경제적 효과 도출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조건부가치 측정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 종속변수: ① 매월 일정 제시금액을 가구 총소득세로 추가 지불의사 여부, ② 1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제시 금액의 2배 추가 지불의사 여부,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제시금액의 1/2 추가 지불의사 여부
 - 설명변수: 양분선택방법으로 금액 제시(1,000원, 3,000원, 5,000원, 8,000원, 15,000원)
 - 통제변수: 농업 및 공적개발원조 관련 인식, 연령, 교육수준 더미, 소득수준 더미
 - 분석결과: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가구당 연평균 30,729원 추가 지불. 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공적개발원조에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아짐

2) 중요도-성취도 분석(IPA)

■ 개요

-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은 중요도와 성취도 두 가지를 통하여 특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분석방법**

- 설문을 통하여 정책수요자나 전문가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성취도(만족도)를 분석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활용하거나 서비스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

■ 분석사례

- 이기호·홍형득(2018)은 전문대학 교육 특성화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주요요인별 IPA 분석, 교육수요자의 특성과 주요요인별 IPA 분석을 실시
- IPA 분석을 통하여 제도 수혜자인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과 만족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요인을 구분
 - 중요도: 비전 및 목표, 교육시설환경, 교과과정, 학생지원, 대학교육성과, 지역기여도
 - 만족도: 학생만족, 교직원 만족

3)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 개요

- 비용편익분석은 국가 추진 국책사업 결정이나 입법영향 분석, 기업의 의사 결정과정 등에 활용하며,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편익(benefit)이 그 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cost)보다 커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
-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여 효율성 촉진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사결정을 하였는지, 또는 대안 중의 선택인지를 평가(Fuguitt & wilcox, 1999; 신동진·박추환, 2006 재인용)
- 하지만 비용 편익 측정이 어려우며, 비용 편익의 잠재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인간의 수명, 자연환경 등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것이나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인간의 도덕적 권리를 도외시한다는 시각도 존재(양진석, 2021)

■ 분석사례

- 신동진·박추환(2019)은 신용보증기금의 성과를 ①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 ② 기금 형태유지의 적합성, ③ 재원조성과 운용상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기금 설치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

- 정책성과(B) = 정책성과1 - (중복보증기금액의 구성비 × 정책성과1)

$$\text{정책성과1} = \{(1 - \alpha) \times S \times \text{VOIC} + \alpha \times (\text{gr} - \text{cr}) \times S\}$$
 - α : 담보능력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 20%
 - S: 총보증공급액(보증평잔)
 - VOIC: 중소기업의 경영자산투자수익률
 - gr: 보증부 대출 자본조달비용(보증료 등 포함)
 - cr: 담보대출 자본조달비용(담보성정료 등 제반 비용 포함)
 - $\text{gr} - \text{cr} = 1.3\%$ 로 가정
- 운용비용(C) = 대위변제액 + 인건비 및 경비 + 지급위탁수수료 - (구상권회수 + 수입보증료 + 여유자금 운용수익) + 기대비용(출연금 × 기대수익률)
-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신용보증기금 사업이 경제적으로 효율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성과는 담보능력이 있으나 신용보증혜택을 받은 기업이 감소해야 정책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됨

4) 산업연관분석⁸⁾

■ 개요

-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으로도 불리며 생산 활동에서 비롯되어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 분석방법으로 산업연관표에서 산출한 투입 계수로부터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 등의 분석계수를 이용
- 산업연관분석은 주로 각 산업 부문의 부가가치, 고용, 수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물량적 직·간접 파급효과, 물가의 파급효과, 산업별 성장요인, 신산업의 파급효과 등을 계측
- 투입계수: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위해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연료 등의 중간 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소비, 투자, 수출 등 외생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최종 수요와 총산출 수준을 연결하는 매개

8) 한국은행(2014)산업연관분석해설

- 생산유발계수: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을 나타내며, 산업 부문 수가 많아지는 경우 투입계수를 활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유발계수를 사용
-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산업간 거래관계를 행렬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로 작성형식에 따라 산업기준의 생산내역을 나타내는 공급사용표와 상품기준의 생산내역을 나타내는 투입산출표로 구분
 - 공급사용표: 산업 내 여러 가지 상품이 결합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반영하여 산업별 생산구조 산출하며 경제구조 분석에 이용
 - 투입산출표: 산업별 단일상품 생산을 전제로 상품별 산출액과 투입 구조를 산출하며 파급효과분석에 주로 이용

■ 분석사례

- 조병도·정준호(2011)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역모기지의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
 - 역모기지 지급액이 소비를 통하여 생산, 부가가치, 수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년 역모기지 금액이 커짐에 따라 생산, 부가가치, 수입 등 유발액과 고용유발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생산, 부가가치, 고용, 수입의 유발모형과 각 유발계수 모형을 활용

5) 계량모형

■ 개요

- 한국은행, KDI,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는 거시경제전망과 파급효과분석을 위해 연립방정식 형태의 거시계량모형을 구축
-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위한 부동산부문 강화 모형을 구축한 연구도 존재

■ 분석사례

- 황관석(2019)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을 구축

- 연립방정식 형태의 거시계량모형을 기반으로 부동산시장 부분을 강화한 모형을 구축, 20여 개의 정의식과 장기식, 단기식을 포함한 30여 개의 행태식으로 구성
 - 총수요, 노동, 물가, 금리, 부동산 5개 부문 중 부동산 외 4가지 부문의 경우 주요 변수를 제외하고 외생화하여 간결한 모형을 구축
- 부동산부문은 아파트 매매가격, 아파트 매매거래, 아파트 전세가격, 지가변동률, 미분양주택, 주택공급, 가계대출 등에 대한 행태식 수정
 -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인 주택금융규제(LTV, DTI), 세금규제(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신규 주택공급 등을 규제수준에 따라 변수화 시킴
- 부동산정책 파급효과는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LTV, DTI규제, 양도세, 주택공급 4개의 변수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LTV, DTI 규제 강화시 수도권 연간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고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며, 민간소비, 주거용건물투자,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3년 평균 기준)
 -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시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하고,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며, 민간소비, 주거용건물투자,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3년 평균 기준)
 - 수도권 주택건설인허가실적 10% 감소 시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연차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

6) PSM, DID

■ 개요

-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집단의 성과 평가를 위해 받았을 경우와 받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 수혜 전·후의 성과를 단순 비교 하거나, 수혜집단·비수혜집단의 성과를 비교할 경우 수혜집단의 환경변화나 집단 간 특성 차이로 인한 영향이 통제되기 어려움에 따라 PSM과 DID를 순차 적용하여 영향을 통제
- DID(Different in Different)는 지원사업 수혜 여부 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두 집단을 비교하여 정부지원 사업의 영향(충격 효과 크기)을 알아보는 방법
- PSM(Propensity Score Matching)은 지원사업 수혜 여부 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두 집단을 선정하기 어려울 경우 수혜집단과 동질적인 성향의 비수혜집단을 찾기 위한 방법

■ 분석사례

- 김흥규(2013)는 PSM과 DID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정부지원사업 중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음
- 먼저 PSM을 활용하여 정부지원 사업의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공변량이 서로 동질적인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이후 DID를 활용하여 정부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 및 방법론 평가
- (분석결과) 성과평가 결과 기존 방법론에 비하여 자기선택편의가 제거되었으며 보다 정교한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IV. 채무조정·재기지원 관련 선행연구

1. 개요

- 이번 장의 주요 내용은 채무조정 관련 선행연구로 ① 채무조정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② 채무조정제도의 혜택 관련 분석, ③ 현행 채무조정 제도의 문제점·개선점 도출에 관한 연구로 구분
- 채무조정 참여자 특성 관련 연구는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성공(실패) 영향요인, 채무조정제도 선택요인 등을 분석
 - 채무조정을 이용한 참여자에 대한 특성 분석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채무조정제도 참여자의 성공률(실패율)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정리
- 채무조정제도 혜택에 관한 연구는 채무조정제도의 연체금리 인하, 채무 감면율 등의 혜택에 대하여 분석한 선행연구 등이 존재
 - 채무조정제도 혜택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하여 연체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와 적정 감면율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알아봄

2. 선행연구 사례

1) 채무조정 참여자 특성

- 박정수·남주하(2017)는 개인워크아웃 자료를 활용하여 채무조정 참여 채무자들의 부도확률 또는 채무조정성공률의 변화와 변화 원인, 영향 요인에 대하여 분석
- 채무조정 참여자들이 채무상환 스케줄에 따라 채무상환을 이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Kaplan-Meier 생존함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진입 연도별, 연령별, DSR별 생존율과 총계획회차별 완제율을 산출

- 진입연도별 생존율은 24회차까지 급격하게 하락하며 이후 완만하게 하락
- 채무조정의 부도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cox 비례 위험모형을 활용
 - 종속변수: 채무조정 부도 여부
 - 설명변수: DSR, 연령, 부양가족, 총채무액, 감면율, 상환기간, 상환계획금액
 - 분석결과: DSR, 연령이 높을수록,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총채무액, 감면율이 낮을수록, 상환기간이 길수록, 상환계획금액이 많을수록 부도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류동훈·박정수·남주하(2021)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채무상환 실패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
 - 채무상환 실패여부(실패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 종속변수: 최종 실패여부(채무상환 실패여부)
 - 설명변수: 부채상환비율(DTI), 월소득, 제외채무월변제액, 다중채무, 악성채무비율, 채무상환개시 시점의 개인 특성(가족원 수, 교육수준더미, 연령대더미, 종사상지위더미, 진입연도더미)
 - (분석결과) ① DTI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실패율이 높음, ② 개인 특성: 제외경비가 높고, 가족원수가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실패율이 높아짐, ③ 채무: 다중채무가 많고, 악성채무비율이 높을수록 실패율이 높아짐
- 김원대·정영우(2020)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차주의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찾고 채무자 특성별로 결정요인의 영향력 차이 여부를 분석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
 - 종속변수: 기한이익상실 여부
 - 설명변수: 약정체결금액, 상환계획기간, 채무조정대상금액, 고객총채무금액, 연령, 월소득, 최저생계비, 재산회수예상가, 가족구성원 수, 연체개월, 감면율, 성별,

지역, 특수채무자 구분

- 분석결과: 모든 설명변수가 차주의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에 영향을 줌
- 결정요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특성이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도 실시
 - 분석방법: 앞의 분석모형에 보증채무 여부, 재약정 여부, 인수방식(일괄매입, 개별매입)을 구분하여 분석
 - 보증채무 여부 분석결과: 보증채무자는 주채무자에 비하여 기한이익상실의 가능성이 낮으며, 약정체결금액과 실감면율이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채무자 대비 낮게 나타남
 - 재약정 여부 분석결과: 재약정 채무자는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신규약정자 대비 3.15배 높았으며 약정체결금액, 상환계획기간의 영향력이 신규약정 대비 높았음
 - 인수방식 분석결과: 개별매입 채권이 기한이익상실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았으며 약정체결금액, 실감면율의 영향력이 일괄매입 대비 크게 나타남
- (시사점) 채무자 특성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가능성이 다르므로 국민행복 기금 채무조정지수의 산정방식 고도화가 필요
- 오윤해(2014)는 채무자구제제도 선택의 결정요인분석, 개인워크아웃 이용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성공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채무조정제도의 개선방식 관련 기존 논의를 평가
-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은 패널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대출구조와 지방법원 과거 판결태도가 구제제도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설수립
 - 종속변수: 각 지역·각분기의 구제제도 선택을 나타내는 인구 대비 개인회생 신청자 수, 인구 대비 전체 채무 구제제도 신청자 수, 개인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신청비율
 - 공통 적용 지역관련 설명변수: 지역 실업률, 자영업자 비율, 임시·일용직 비율, 1인당 지역내총생산, 농어가 인구비율
 - 대출구조 영향 설명변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저축은행/비은행가계대출,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 수신액

- 분석결과: 대출구조와 구제제도 간에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할수록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났으며, 가계부채, 저축은행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작아질수록 개인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 지방법원의 과거 판결태도 영향 설명변수: 개인파산 인용율, 면책 인용율, 개인회생 개시 인용율
- 분석결과: 지방법원의 과거 판결과 구제제도 선택 간에는 일부지역에서 면책 인용률이 낮아질수록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채무조정 성공요인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채무조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
 - 종속변수: 채무조정 지속여부
 - 설명변수: 연령, 성별, 가족구성원 수, 부채/월소득, 은행부채/월소득, 근무형태
- (분석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월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을수록, 자영업자일수록 채무조정 지속에 성공할 확률이 낮았음
- 박정민·권하니·백아름(2021)은 채무조정 거쳐 완제에 이르거나 앞둔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경험 및 완제 성공요인을 질적연구
-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9명을 심층면접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채규모·부채부담정도 및 채무발생경위, 삶의 질 및 생활여건, 채무조정 성공요인, 채무조정제도 이용경험을 파악
 - 채무조정 신청이유: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채권주심 중단이며, 그 외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생활 유지를 언급
 - 추가적 혜택: 채무조정제도 이용 중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상환유예나 소액대출제도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꾸준히 변제 가능
 - 완제 성공요인: ①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액 조정, ② 분할·장기 상환, ③ 실직·질병 등의 경제적 문제 발생 시 상환 유예 가능, ④ 상담사의 심리적지지 등을 채무조정 혜택 중 완제 성공요인으로 언급

2) 채무조정 지원방식 특성

▣ (연체금리 인하) 김남현(2019)은 연체금리 인하에 대한 상환효과 존재에 대하여 분석

- KR&C가 보유한 채권원장, 분기별 상환내역, 채무관련인 데이터를 OLS, 토빗모형, 선택편의를 고려한 Heckman모형의 횡단면 추정을 활용하여 분석
 - 종속변수: 연체금리 인하 이전·이후의 상환액
 - 설명변수: 채무자의 성별, 나이, 연체 기간, 보증인여부, 추정감면액을 활용
- 연체금리 인하 이후 채무자들의 상환실적이 변하고 있으며, 상환 증가액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연체 기간이 길수록, 보증인이 없는 채무자가, 감면액이 클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채무상환 요인분석 및 예측에는 표본내 추정에서는 OLS와 Heckman 모형이, 표본 외 예측에서는 Heckman 모형의 예측력이 우수하게 나타남

▣ (채무감면율) 남주하 외(2014)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실행정보, 회차별 상환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채무감면의 적정감면율을 산출

- (채무조정 실행정보 자료) 채무조정 채무보유자의 특성, 채무현황, 채무조정 약정정보, 주요 상환결과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
- 적정 채무감면율은 먼저 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채무감면율 구간을 도출하고, 경제적 자활을 도와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대감면율과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한 최소감면율 사이에서 적정감면율을 산출

▣ Schmeiser·Gross(2015)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이용자 데이터를 이용 채무재조정 및 파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 서브프라임 장기 모기지의 채무조정 성과의 결정요인으로는 이자율 조정 보다 원금 감소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3)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 신용보증기금(2017)은 충분하지 못한 채무조정 기능으로 인한 부실 채무자 신용회복 지연 및 부실채권 정리 지체 우려 극복을 위해 채무조정 개선안을 도출

● 신보 채무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소극적 채무조정, 채무조정 목적 불일치, 실효성·형평성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높은 상환부담, 엄격한 분할 상환기준이 도출됨

- 소극적 채무조정: 구상권 회수 시 채무관계자의 요청으로만 채무조정이 이뤄짐
- 채무조정 목적 불일치: 업무방법서에는 구상채권의 회수에 실익이 있을 경우, 채무조정요령에는 채무관계자의 경제적 회생지원 가능성 및 채무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채무조정 목적이 불일치
- 실효성, 형평성 문제: 채무관계자(주채무자, 연대보증인 등) 유형에 따라 감면 조건과 내용이 달라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와 감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부담 채무액 차이 정도가 크지 않아 실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 상환부담: 대위변제시 상환하여야 하는 변제금, 위약금, 보증금 등의 부담이 큰 편
- 엄격한 분할 상환: 분할 상환 허용조건이 엄격하며, 분할 상환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일시상환해야 하므로 부담이 큼

● 채무조정 개선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① 적극적인 채무조정 실시, ② 채무조정의 명확한 목적 규정, ③ 원금 감면 확대, ④ 사회적 약자 배려 확대, ⑤ 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

- 적극적 채무조정: 구상권 발생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여 적극적 채무조정 실시
- 명확한 목적: 채무조정 관련 규정의 채무조정 목적이 일치하도록 조정(채무상환 능력을 고려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
- 원금 감면 확대: 채무자 간 형평성을 위하여 연대보증인 제외 타 보증인에 대해서도 원금회수가 어려운 경우 원금감면 허용 필요
-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 및 혜택을 다른 금융공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

- 상환부담 완화: 분할 상환 기간 확대 및 조건을 완화, 대손금융 인하, 상환유예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상환부담을 완화

▣ 구정한·이규복(200)은 기존 사적채무조정제도 개선안, 개인회생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사적채무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 문제점으로는 대출취급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신복위 유인구조가 채권자에게 편향되어 있다는 점, 정해진 산식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원금감면율, 신용회복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언급

- 대출취급금융회사의 관심부족: 사적채무조정이 주로 신복위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연체위기, 연체,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관심 및 역할 부족
- 채권자 중심 채무조정: 신복위 채무조정은 과반 이상의 채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신복위 수입의 80%가 채권금융기관의 분담수수료로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채무조정안이 아닌 채권자 중심 채무조정
- 연체자, 채무불이행자 상황 미반영: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작고, 획일적인 산식에 따라 감면율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채무조정 대상자의 상황 반영이 어려움
- 신용회복 지원 미흡: 채무조정만으로는 채무조정 대상자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다시 고금리대출 등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채무조정 대상자의 신용회복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부족

● 앞서 나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

- 대출취급금융회사 관점 전환: 대출취급금융회사들이 연체자나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감독·규율체계가 정립되어야 함
- 채무조정 주체 전환: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채무조정을 금융회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복위는 지원·보완하는 체계로 전환
- 채무자 환경 고려: 가용소득, 재산, 채무금액을 고려하여 채무조정하는 현재 방식 대신 연령, 역량, 장래소득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채무조정안을 설계
- 재산평가액·제외채무 인정 범위: 공동지분, 담보대출 등의 재산평가액이나 제

외채무 등 채무자 재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여야 하며 이후 심의위원회가 채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역할

- 공적채무조정과의 관계: 현재 공적채무조정(개인회생)과 사적채무조정은 채무 조정 내용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이 존재하기에 이를 개선하여 사적채무조정이 신용회복의 틀에서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공적채무조정이 최후 안정망 역할을 하는 체계로 전환
- 대출이용체계 개선: 신용회복 중 자금여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대부업 등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경우 다시 연체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금리대출에 대한 유인방지책 마련

■ 김성숙·홍연금(2021)은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의 소비자 불만사례를 질적 분석하여 모기지론 채무조정(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HAMP) 관련 소비자문제를 유형화함

- 2016년 캘리포니아주의 변동금리 모기지론 상담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채무조정(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관련 불만 사례를 채무조정 신청 전, 신청 후, 이용 중으로 구분하여 정리
 - 채무조정 신청 전: 채무조정 신청문의에 대한 대출회사의 무응답, 채무조정 전 압류·경매·숏세일(Shortsale)추진,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가 모르고 있던 연체 정보나 신용문제의 발견 등이 주요 불만사례
 - 채무조정 신청중: 채무조정대출회사의 소통 어려움, 동일한 심사서류에 대한 중복요청, 잘못된 서류 사용, 이유 없이 채무조정 거절, 이중추적을 통한 압류 추진 등
 - 채무조정 이용 중: 연체·신용문제, 채무조정 이후 변동된 지급액 및 이자율이 소비자의 예상과 다른 경우 등
- 앞서 나온 소비자 문제를 유형화하면 크게 네 가지로 ① 대출서비스 제공자의 채무조정 회피(압류 선호), ②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보 및 소통 부족, ③ 대출서비스 제공자의 이중추적, ④ 신용정보 관리 문제

V. 결론

- 어떤 요인을 효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효과분석의 기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효과분석의 목적 설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분석방법 및 변수를 설정하여 효과 측정
- 고객 만족도를 통하여 효과를 볼 경우 고객 만족도 조사, IPA 분석 등을 활용하여 측정 가능함
- 재기지원 제도를 이용한 집단과 비이용 집단의 비교를 통하여 효과를 측정한다면 PSM, DID를 활용할 수 있음
-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보고 싶다면 산업연관분석이나 계량모형 등을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음
- 제도 시행 전 설정한 목표의 달성이나 국민생활·국민 행동에 미친 영향 등을 통하여 효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공공 정책의 특성상 시장에서 산출되지 않는 편익 또한 고려하여야 함
- 그 외 채무조정에 성공(실패)하는 이용자의 특성, 채무조정 혜택 관련 선행연구나 기존 채무조정의 개선방안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공사 채무자 재기지원 제도에 적용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음
-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소극적 채무조정 대신 구상권 회수 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는 적극적 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조정 이용자의 특성(연령·가족구성원 등 사회학적 요소, 채무액·기간 등 상환 정보, 상환여력,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채무 감면을 및 분할 상환 기간 산출
 - 재정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
- 채무조정 이용자의 실효 방지를 위하여 신용 상담 기능 강화 등 재기지원 방안 다양화 및 활성화

참 고 문 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21.9.9.)주택금융 취약차주 돌봄에 공공기관이 나선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6.11.)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2.8.)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
-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2019.01)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방안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01)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 구정한·이정복(2020.02)사적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 KIF VIP리포트 2020-04, 한국금융연구원
- 김남현(2019)부실채권 특성과 채무재조정의 정책효과분석: KR&C의 연체금리 인하사례
- 김성숙·홍연금(2021)미국 금융위기 이후 모기지론 채무조정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정책, 생활과학연구논총 제25권 제1호, pp.121-137
- 김원대·정영우(2020)채무조정 차주의 기한이익상실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국민행복기금을 중심으로, 경영경제연구 제42권 제4호, pp.45-74
- 김흥규(2013) PSM과 DID의 순차적 적용을 통한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Information System Review 제15권제3호, pp.141-149
- 남주하 외 3인(2014)국민행복기금 채무감면율의 적정성에 대한 소고, 응용경제 제16권 제2호
- 류동훈·박정수·남주하(2021)채무조정 상환의 실효율 결정요인 분석: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중심으로, 금융안정연구 제22권 제2호, pp.139-168
- 문광민(2021)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의 경제적 가치 추정: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5호, pp.548-560
- 박정민·권하늬·백아름(2021)채무조정 이용 경험 및 완제 성공요인: 질적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2권 제4호, pp.99-129

참 고 문 헌

- 박정수(2017)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유효성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 23권 3호
- 오윤해(2014)개인채무조정제도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14-09
- 윤수재(2019)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5
- 이기호·홍형득(2018)대학교육 특성화정책의 효과성연구: 전문대학 정책의 중요도-만족도 (IPA)분석 중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2권 제3호, pp.97-131
- 신동진·박추환(2006)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신용보증기금의 성과 분석 : 1997~2003, 경상논총 36호, 한독경상학회 pp.45~65
- 신용보증기금(2017)신용보증기금의 채무조정제도 개선안 연구
- 조병도·정준호(2011)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역모기지의 경제파급효과분석, 응용경제 제 13권 제2호, pp.359-387
- 한국은행(2014)산업연관분석해설
- 황관석(2019)부동산정책의 효과분석모형 구축,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